

단체교섭의 유럽화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역자주 이 글은 유럽노사관계관측소(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EIRO)에 투고된 각국 노사 관계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비교연구자료 『The "European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은 유럽연합(EU)과 유럽단일통화체제(Euro)의 출범 이후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유럽차원의 단체교섭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단체교섭은 국가간/부문간/산업별/기업별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럽 노사단체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의 '유럽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 추세에 발맞춰 산별차원 단체교섭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이 글은 단체교섭에 대한 시야와 전망을 다양하고 폭넓게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로 EIRO는 1975년에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각료회의의 규정에 의해 창설된 '생활·노동조건을 위한 유럽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재정으로 설립된 유럽각국 노사관계 조사기구이다.

EIRO 인터넷주소 <http://www.eiro.eurofound.ie>

유럽연합(EU)은 1985년 유럽단일시장(SEM)으로의 이행을 결정한 이래로 한층 긴밀한 경제통합을 겪어왔다. 특히 다국적기업들(MNCs)은 유럽차원에서 생산 유통 마케팅을 통합할 수 있는 경영 구조를 창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영방식을 빈번하게 재편해 왔다. 내수에 기반한 기업의 활동 역시 유럽단일시장(SEM) 안에서의 국제경쟁 확대로 더욱 영향을 받아 왔다. 경제통화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¹⁾이 창설되자 경제관측자들은 유럽경제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어 각국 경제 및 그 기업들이 받는 경쟁압력 또한 더욱 심화되리라 판단하였다.

한편, 이러한 유럽의 경제통합은 각국 단체교섭의 과정 및 결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임금, 노동시간, 고용, 그리고 노동성과 등이 모두 “체제 경쟁”의 중요 구성요소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통합이 단체교섭 과정에 미친 영향은 전국 혹은 지역차원의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국제통계 비교자료들을 활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노사관계 상황을 언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나라의 부문간(intersectoral), 부문별(sector), 혹은 기업차원 단체협약에서는 협약 내용을 다른 유럽

연합(EU)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연계시킨다고 명시한 조항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노조들도 각국의 교섭안건(bargaining agenda) 및 협약내용에 대한 유럽차원의 조정 뿐만 아니라, 교섭 쟁점에 대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사용자단체의 경우, 각국 사용자단체 간에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기는 하나, 노조처럼 단체교섭의 국제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개별 사용자의 경우, 특히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 자회사들의 작업성과 및 고용관련 교섭에서 공통되거나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글은 유럽노사관계관측소(EIRO) 각국센터의 보고에 기반한 것으로 1999년 여름 현재,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과 노르웨이에서의 단체교섭 과정과 그 결과가 어느 만큼 유럽차원의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유럽차원의 사회적 대화(European social dialogue)와 같은 유럽차원의 사안은 이 글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또한 단체교섭의 “유럽화”를 향해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1) 경제통화동맹이라고도 한다.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 EC정상회담에서 회원국간 환율고정, 단일통화정책, 단일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수행 등을 규정한 경제통화연합(EMU)의 원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조약에 따라 이후 EC24국 통화와 중앙은행들이 유럽단일통화(euro)와 유럽중앙은행체도로 대체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 의주주

과정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부문간, 부문별, 기업별 등의 세 차원에서 생겨난 변화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부문 및 기업 차원에서의 상황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금속 및 금융부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노사가 경제통합의 심화라는 맥락에서 단체교섭의 향후 추세 및 사태발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소개될 것이다.

전국 그리고/혹은 부문간 현황

사회협약과 단체교섭

1990년대에는 몇몇 유럽국가에서 새로운 전국차원의 노사정협약이 이루어졌

는데, 이 협약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두 유럽통합에 영향받은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이 협약들은 단체교섭에 참가한 당사자들에게 국가경쟁력 증진을 위해 임금억제정책을 따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협약들은 "경쟁적 조합주의"(competitive corporatism)의 새로운 형태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1993~97년 사회협약은 임금인상률을 주요 경쟁국가들보다 낮은 2%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사회협약은 해당국가에게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규정한 경제통화연합(EMU) 경제수렴기준(convergence criteria)과 유럽단일통화(euro) 참가조건을 충족시

[표 1] 경제통화연합(EMU) 기준 합치를 목적으로 한 사회협약들

이탈리아

현재의 전국협약인 「동반자2000」(1997~2000)은 마스트리히트 기준과 경제통화연합(EMU)을 명시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협약은 경쟁력 증진과 EMU 수렴기준 충족이라는 긴급한 목적에서 임금인상률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1993년 7월 노사정 전국협약은 이원(two-tier)교섭구조를 도입하였다. 이원교섭구조는 부문별 전국협약에서는 임금인상이 예상물가인상률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고, 기업별 협약은 경쟁성태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1997년 한 관련보고서는 1993년 협약이 EMU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물가안정과 공공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1998년 12월 노사정 "사회협약"은 자국 경제정책과 노사관계에서 EMU가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 협약은 장래 산업부문별 협상의 준거준이 국내가 아닌 유럽 평균 물가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르투갈

노사정간 전략적 협력협약(Strategic concertation pact)(1996~9)은 경쟁력, 고용, 사회 움직임 등을 제고함으로써 자국경제를 EU에 완전히 통합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이 생산성 향상분의 절반을 넘어 서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은 포르투갈의 EU 가입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졌다. 주요 노동인 CGTP가 협약에 조인하지 않자, 정부는 1998년초 「EMU와 조화를 이룸」 교섭정책을 권장하기 위해 「대(對)유로(euro) 전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출법시켰다.

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사회협약에서 제시하는 임금억제정책은 이 수렴기준에 따라 물가를 낮추고 재정적자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해왔다. 이와 관련한 각국별 사례들이 [표 1]에 실려 있다.

부문간 교섭의 유연화

부문간(intersectoral) 교섭의 유연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로 벨기에를 들 수 있다. 1996년에 노사 당사자들이 협약 체결에 실패한 후 정부는 <경쟁력증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에는 1997~8년의 '임금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르면 임금인상은 벨기에 인접국가들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의 평균임금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정부가 EMU 경제수렴기준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1998년 12월 노사당사자들은 1999~2000년도 부문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은 인접국가들의 임금추세를 평균임금인상률 결정의 핵심 준거로 삼는다는 경쟁력증진법상의 '임금결정기준'(wage norm)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협약은 1999~2000 최고임금인상률을 5.9%로 정하였는데, 이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임금인상 추정치에 기초하여 계산된 것이다.

EMU가 단체교섭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 현저한 예로는 핀란드를 들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1997년에 노사당사자

들이 이른바 '경제통화연합 완충기금'(EMU buffer)를 도입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것은 핀란드 경제가 국제경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정에 따른 것으로, 노사는 EMU 하에서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불균형적인 경기순환의 충격"이 주는 악영향을 덜기 위하여 연금제도 및 실업보험과 관련된 두 개의 '완충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에 의하면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노사가 규정분보다 약간 더 많은 사회보장분담금을 기금으로 비축하고, 경기후퇴기에 이렇게 비축된 완충기금을 추가적인 사회보장지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교섭 국제조정을 위한 제안들

그간 각국 노총은 교섭관련 정보 교환과 협력을 위해 유럽노조연맹(ETUC)을 통한, 혹은 각국 노조간 교류를 활용해 왔다. 한편, 벨기에 독일 록셈부르크 네덜란드 노총들은 1998년 9월 네덜란드 도른(Doorn)에서 만나 공동선언-이른바 <도른 제안>(Doorn initiative)을 채택하고, 현재의 노조간 교류에서 한 수준 더 나아가 교섭정책의 국가간 조정이 공식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선언은 각국 노동자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하여 EMU하에서의 단체교섭은 국가간에 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언의 핵심은 각국의 교섭을 위한 '교섭방침'인데, 이에 의하면 각국 노조 교섭대표들은 '불가변동

과 노동생산성향상분의 합계"를 최저 타결기준으로 삼아 협약을 맺어야 한다. 선언에 참여한 각국 노동자들은 인근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노동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임금억제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어떠한 요구도 거부하기로 하였다. 유럽노련(ETUC)은 <다른 제안>을 환영하고, 이런 제안들이 "우선 모든 유로(euro)권 국가들로 확대되어야 하며, 나아가 모든 관련 국가들로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고 결의하였다(제9차 유럽노련(ETUC) 총회 채택 결의안, 1999년7월).

한편 아직 사용자측에서는 단체교섭정책을 국제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 교섭안전에 대한 각국 사용자단체들 사이의 교류는 정보교류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협력이 증진된 예도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2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용자단체는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려는 두 나라 정부의 입법발의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부문별 현황

국제 비교자료 활용

부문별(sectoral)로는 다른 나라의 임금/노동조건을 교섭에서 명시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명시적인 경우는 이탈리아의 은행업

인데, 1998년에 노사는 "유럽 평균 수준"의 노동비용에 도달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점진적으로 절감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이탈리아은행협회는 오랫동안 자국 및 유럽각국 은행들의 임금/노동비용 비교연간보고서를 작성해 왔었다.

위와 같은 협약들은 사실 드물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임금/노동조건 관련 국가간 비교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퍼져있다. 왜냐하면 교섭결과가 국제경쟁에서 점점 더 중요시 되기 때문이다. 교섭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노사 양측 모두는 다른 나라 현황을 참조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지리적 차원에서 분류한 것으로 대체로 현재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무역관계를 반영하고 있다(표 2).

남유럽국가들에서는 교섭정책에 대한 논의가 임금/노동조건을 유럽평균치에 접근시키는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교섭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유럽차원의 비교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노조는 유럽평균에 상응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추구하는데 반해, 사용자단체는 임금/근로조건을 유럽 평균에 신속히 일치시키는데 반대하며 자국의 노동생산성에 상응시키고자 한다. 포르투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과 같은 고임금 국가에서는 국제 비교자료가 사용자단체가 노조의 임금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임금억제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대응하여 노조는 독일의 높은 생산성과 낮은 노동쟁의 수준을 제시하는 데에 국가간 비교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1999년 교섭요구를 확정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독일 금속부문 교섭이 유로(euro)권내 인근 국가들의 단체교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 비교자료를 활용하는데서 표현되는 교섭의 유럽화 경향이 갖는 의미와 범위는 부문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금속/금융부문에서는 교섭과정에서 국제

비교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는 듯하다. 금속부문에서는 고도로 국제화된 산업구조, 높은 외부시장 의존도, 그리고 자동차/전자부문에서 보여지는 다국적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장악력 때문에 국가간 비교자료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문 역시 급속도로 국제화되고 있으며, 대체로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에서도 국제 비교자료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건설업은 유럽차원에서 가장 발달된 노동시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특별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부문 같은 내수에 기반한 부문에서는 국제비교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표 2] 단체교섭에서의 국가간 통계비교 활용

<p>덴마크</p>	<p>독일과 스웨덴의 임금수준 변화가 덴마크 수출산업분야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p>
<p>프랑스</p>	<p>노조의 사용자 모두 국가간 비교자료를 활용하는 데에 매우 익숙하다. 특히 독일 금속부문 교섭결과는 프랑스 언론과 노사당사자들에 의해 널리 토론된다. 35시간 노동제 도입에 관한 협상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외국의 경험이 노사 당사자들에 의해 참고되고 있다.</p>
<p>네덜란드</p>	<p>신입별 교섭당사자들(특히 금속)은 별기예외 독일의 해당부문 사정을 항상 참조하고 있다.</p>
<p>스페인</p>	<p>1999년 금속산업 단체교섭을 위한 노조활동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최근 독일금속산업 교섭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는 독일과 스페인 자동차산업 노조활동가들간의 밀접한 관계가 역할을 했는데, 특히 폭스바겐과 SEAT 노조의 협력은 양 금속산업노조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p>

노사당사자들의 제안

유럽 각국의 사용자단체와 노조는 유럽차원의 부문별 사용자단체 또는 노조 조직의 회원조직들로 교섭에 관련된 고용문제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정보교

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몇몇 유럽차원 조직들은 많은 적든 정기적으로 각국 가맹조직을 위한 국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유럽금속산업사용자조직(WEM)은 “국제사회정책 전개상황”

[표 3] 단체교섭 조정을 위한 노조 발의 사례

부 문	제 안
금속	유럽금속노련(EMF)은 유럽차원의 초국적 단체협약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유럽차원의 교섭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각국 교섭정책을 유럽차원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조정전략’을 채택하였다. 1998년 12월 EMF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하향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차원 조정규칙’을 채택하였는데, 거기에서 ‘모든 나라에서 노조의 임금정책은 물가인상분을 상쇄하고 노동소득이 생산성 향상분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MF는 1998년 7월에는 노동시간이 연간 1,75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노동시간 한장’을 채택하였다.
개인서비스	1998년 3월 국제섬염사무전문기술노련유럽지역본부(Euro-FIET)는 <EMU : 고용과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략문건을 채택하였다. 이 문건은 각국내의 부문별/기업별 교섭을 유럽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999년 6월 Euro-FIET는 ‘서로운 유로(euro) 교섭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방침’을 채택하여 자신의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였는데, 이 방침은 Euro-FIET내 소부문(산업/은행/보험 등등) 차원에서 교섭전략 조정을 꾀하고 있다. 그 목적은 공통의 협상 목표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목표는 ‘현존하는 최선의 실천 속에서 나와야 하며, 유럽차원의 조정을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각국이 처한 환경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금은 물가인상률을 상쇄하고 생산성 향상분의 배분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섬유	2000-2001년 노동시간 및 최저노동권에 관한 유럽 산업부문별 사용자단체와의 협의를 위해, 그리고 2005-2008년 산업부문차원의 유럽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유럽노조연맹의 섬유, 의복, 가죽분과(ETUF-TCL) 내에 특별교섭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인쇄 및 종이	유럽그래피노련(EGF)은 보다 긴밀한 교섭정책 협조를 위한 제인으로서 특정 직무의 숙련 분석을 위한 일반기준을 개발해 왔다.
건축/목공	유럽건축목공노련(EFBWW)은 가맹조직간의 교섭 조정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강령을 토론하고 있다. 이 조직 사무총장인 켈 크레머스(Transfer Vol. 4, No 2, 1998)에 따르면, “협력은 실제로 교섭이 벌어지고 고용조건이 결정되는 곳에서 생겨나야 한다. 이는 많은 경우 유럽차원 단체교섭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교섭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국제적 조정보다는>역주) 양국간 조정(bilateral route)이 점점 더 선호될 것이다.”

에 관한 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 소식지는 각국의 노사관계 추세를 비교한 국제통계뿐 아니라, 이 산업의 각국별 최근 교섭상황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EMU이 국가간 임금/노동비용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기 때문에, WEM은 회원단체들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꾀하고 있다. 금속산업 이외의 부문별 사용자단체들도 각국 가맹조직을 위한 임금/노동조건 관련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에서 유럽차원의 체계적인 협력을 제안하는 경우는 아직도 예외적이며, 그나마 노조 측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노련(ETUC)에 가맹한 유럽의 부문별 노조조직의 제안들 가운데 유럽금속노련(EMF)의 '조정전략'(coordination approach)이 아마도 단체교섭의 유럽화에서 가장 진전된 전

략에 속할 것이다. [표 3]을 보면 금속 이외의 몇몇 부문에서도 노조의 제안이 나타나고 있다.

양자간/다자간 협력

각국 노조들도 양자간(bilateral) 혹은 다자간(multilateral) 국제협력을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진전된 형태는 독일금속노조가 제안한 지역간 교섭 네트워크일 것이다. 독일금속노조는 유럽금속노련(EMF)이 제시한 조정전략 틀 안에서 지역별 교섭단위별로 이웃 국가의 금속노조들과 '교섭동반자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하였다. 동반자관계의 목적은 ① 교섭기간동안 노조참관인 교류를 조직하고, ② 교섭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③ 현재의 교섭안건에 대해 합동 세미나를 조직하며, ④ 지역별 교섭에 '유럽차원(의 관점-역사주)'을 도입하며, ⑤ 중기적으로

[표 4] 독일금속노조 교섭지구별 국제 단체교섭 동반자관계

독일금속노조 교섭지구	동반자 노조
뒤셀도르프(북부라인-베스트팔리아) 함부르크(북부 독일) 슈투트가르트(바덴-뷔르템베르크) 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 원현(바바리아)	FNV Bondgenoten 및 CNV BedrijvenBond(네덜란드); CCMB및CMB(벨기에) CO-Industri(덴마크) Svenska Metall(스웨덴) SMUV(스위스), Fiom-Cgil(이탈리아) NSZZ Solidarnosc(폴란드) KOWO(체코) GMBE(오스트리아), KOWO(체코), KOWO(슬로바키아), SKEI(슬로베니아), VASA(헝가리)
관계수립중 하노버(남부작센, 작센-안할트) 프랑크푸르트(헤세, 라인란트-팔라티나테, 짜르)	AEEU(영국) CGT, CFDT, CGT-FO(프랑스)

는 초국적 교섭의 실질적인 조정을 수행할 새로운 기구를 건설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독일금속노조 지역조직들은 교섭에서의 동반자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하였다(표 4). 그 결과 1999년에 몇몇 지역에서는 외국 금속노조에서 온 교섭참관인들이 교섭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지역간 단체 교섭 동반자관계 형성 및 교섭기간 중 노조참관인 교환방문이라는 시도는 다른 부문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3월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의 건설노조들은 국가간 교섭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조정하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건설노조들 간에는 양국간 교섭조정 및 교류 제안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은 대개 건설산업의 복지 및 휴가기금에 대한 각국 노조간 조정을 의도하는 것들이다.

이와 다른 형태의 양국간, 다국간 국제 협력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 스칸디나비아의 금속노조들은 노르딕금속노조(Nordic Metall)가 설정한 틀 속에서 임금정책에 관한 합동실행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포르투갈과 스페인 은행들 상호간

에 자본침투가 상당수준 존재하는 환경 때문에 두 나라 금융노조들 사이에는 교섭안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존재하고 있다.

- 1999년 4월 독일광산화학에너지노조(IG-BCE)와 프랑스민주노총(CFDT)가맹조직 중 하나인 화학에너지노련(FCE-CFDT)은 '교섭정책 조정'을 포함한 협조협약에 조인하였다.

한편, 사용자단체의 경우 명시적으로 교섭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많은 사용자단체들, 예를 들어 독일과 스웨덴의 사용자단체는 기업차원으로의 단체교섭 분권화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는 각국 사용자단체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식화된 접촉이 존재하고 있다.

-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금속부문사용자단체들 사이에는 정기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 1998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금속 사용자단체는 독일 금속산업 사용자들을 초청하여 독일 금속산업의 35시간 노동제 경험에 대해 청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극히 드물지만 노조의 사용자단체가 합동으로 작성한 단체교섭 국가간 조정 제안도 있다.

-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금속산업노조 및 사용자협회는 협약 조건들과 장래에

발틱연안 국가들의 단체협약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연구하는 합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화학노조들은 2년 전 각국의 화학부문 사용자단체와 함께 교육훈련,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3국 공동 발의' (common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여기서 임금교섭 범위는 협소한데, 이것은 각국의 임금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 차원

기업차원에서도 다른 나라 경제환경을 명시적인 기준으로 삼는 단체협약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흔한 일은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1998년에 임금, 고용안정, 노동성과 등에 대한 3개년 '일괄협상'을 벌였던 미국 제너럴모터스(GM)사의 영국 자회사인 보홀(Vauxhall) 사례일 것이다. 이 협약에서는 스털링화의 고환율이 생산비용에 미칠 충격을 반영하여 제3차년도 임금인상치 일부를 스털링화의 대(對)마르크(지금은 유로화) 환율에 연동시켰다. 또한 이 협약은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연한 작업제도(working arrangements)들을 도입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유럽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다국적기업들에서 나타나는 "양보교섭"이다. 여기서 협상이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서 이루어

어지더라도 사용자측이 활용하는 자료는 명백히 유럽, 심지어 세계차원의 그것이다. 반면 내수 중심 기업들에서는 그런 상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규모 다국적기업에서는 경영 측이 교섭에서 작업성과와 노동조건에 관한 국제비교를 활용하는 예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이 기업 차원에서 결정되는 (보다 소규모의 기업에서는 역자주) 교섭에서 국제 임금통계를 제시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런 기업차원의 교섭에서는 노조와 종업원평의회가 경영진보다 국제비교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종업원들 편에서는 유럽종업원평의회(EWCs)가 교섭사안들에 대한 정보교환의 귀중한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국가간 교섭조정에서 잠재력이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교섭조정의 주체는 되지 못하고 있다.

경영진의 국제 비교자료 활용

다국적기업 국제본부는 보통 노동관련 성과지표의 국제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되는 성과지표들은 총노동비용, 종업원수(headcount), 노동생산성, 이직, 결근, 임금조정, 노동쟁의 등인데, 이 가운데 총노동비용에 관한 통계자료가 가장 잘 수집되고 있다. 자료 수집은 국제적으로 통합된 생산체계를 지니거나,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조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경영진이 투자위치나 생산거점 재배치를 결정하는 데에,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각 생산거점의 성과를 비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더우기 이런 비교 자료들은 지속적인 투자 여부, 생산거점의 재배치나 생산량 제한당, 투자의 회수나 종결 등을 결정하는 근거로써, 작업성과 및 고용관행과 관련한 다국적기업내 지역 또는 전국 차원의 교섭에서 활용된다. 이렇게 하여 생겨나는 "양보교섭"의 결과는 대개 노동자측에서 노동관행 및 노동조건에서의 변화를 수용하고 사용자측은 지속적인 투자와 현 생산거점의 유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맺어진다. 그러나 임금교섭에서는 그런 비교자료가 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생산/노동/고용 관행에서 유럽 및 세계적인 차원으로 "최고의 성과"를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특히 작업조직, 품질보증, 노동시간 조절, 직무 및 과업 유연화 등과 관련하여 특히 그러하다. 이에 따라 "최고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성과의 "강제적 비교"가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 통합된 생산활동이 벌어지는 산업-예를 들어 자동차, 전자소비재, 식가공업 등에서 특정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활동은 다른 나라 자회사들과의 경쟁, 즉 현재의 생산

및 미래의 투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자회사들 간의 내부 경쟁과 맞물려 있다. 다국적기업 국제경영본부에 의해 각국 자회사들간의 노동비용 및 생산성을 둘러싼 성과 비교가 이뤄지며, 이는 각 자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입력으로 작용한다. 노동자들과의 지역 교섭에서는 "가장 나은" 성과가 요구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측이 현재의 생산 수준과 계속 투자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노동자들은 노동/고용 관행에서 일정하게 양보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만 은행/금융부문은 이러한 예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 [표 5]는 경영진이 국가간 비교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조와 종업원평의회 국제 비교자료 활용

기업별/지역별 교섭에서는 노조나 종업원평의회가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기업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 비교자료를 제시하는 일이 경영진보다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잘 통합된 다국적기업들, 예를 들어 노조가 잘 조직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 등의 다국적기업에서는 국제비교자료 활용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은행/금융부문에서는 이런 경향이 덜하다. 기계분야에서는 유럽금융노련(EMF)의 노동시간현장([표 3])이 국제비교에 기초한 노조 요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영국의 포드사와 세너럴모터스(GM)

[표 5] 다국적기업 경영진의 국가간 비교자료 활용 예

기업/부문	비교자료 활용
자동차	언론보도와 조사연구들에 의하면 "경제적 비교"가 둘 이상의 EEA나라들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대규모 자동차 제조기업들, 예를 들어 비엘더블유/로버(BMW/Rover) 포드(Ford), 제너럴모터스(GM), 푸조(Peugeot), 르노(Renault), 폭스바겐(Volkswagen)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비교자료들은 그 지역의 공정에 투자하는 댓가로 노동과 고용관행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보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교섭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기	스웨덴에 본부를 둔 일렉트로록스(Electrolux)그룹의 그룹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자회사 잔누시(Zanussi)에서 있었던 노사교섭에서 2년간 작업조직과 노동관행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가로 고용보장을 확약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핀란드 목제품	핀란드에 본부를 둔 목제품 다국적기업들은 생산의 재조직화에 관한 공방별 교섭에서 인위수, 생산성, 노동시간 등에 관해 다른 유럽국가에 있는 지사 소속 영업체들의 성과에 대해 빈번히 참고하고 있다.
식기공업	현 선도적인 다국적기업의 유럽내 식기공업 분야의 그리스, 스페인, 영국 내 자회사들에 대한 한 조사에 의하면,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들간에 특정 제품라인에 대한 생산 활동을 위한 경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고용 및 작업관행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 공장들내의 교섭에서 도입한 조치들이 어떠한가하는 것이다(초국적경영은 고용관행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 식기공업의 한 사례, X Coller and P Marginson, 노사관계저널, Vol. 29, No1(1998)). 그 다국적기업은 모든 영업단위에서 쓸수 있게 매뉴얼로 축적된 "가장 나은" 생산, 작업 및 고용관행들을 규명한 내부 상담자 팀을 채용하였다. 그런 "최상의 관행"은 불리한 성과비교자료에 대항하여 지역적 해결책들로 수행되었다.
제너럴 모터스	모든 제너럴모터스 유럽생산지점들을 포함하는, 제너럴모터스가 천명한 바의 향후 5년간의 대규모적인 전세계적 노동력감축의 맥락에서 국제적인 "벤치마킹" 조사를 따라서, 독일의 자회사 오토의 작업원평의회는 1998년에 경영진과의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여기에서는 작업고나행과 추가적인 임금 감축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대가로 향후 투자가 확약되었다. 이 합의의 골자에서, 유사한 합의가 벨기에와 영국의 자회사에서 잇달아 맺어졌다. 이 합의들에서는 계속적인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언집의 대가로 생산성 향상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노보 노르디스크	이 네덜란드 제약분야 다국적기업에서는 내부 컨설턴트팀이 생산, 작업조직 등에서의 "최선의 관행"을 규명하면서 자회사들 둘과 있다. 이런 최선의 관행들은 모든 각 지역 경영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다. 몇몇 예를 보면 그런 최선의 관행의 수행은 각 지역의 노사대표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스왈치/토오다/후버	최근에 스왈치사가 르레인에, 토오타가 북부프랑스에, 후버사가 생산거점의 일부를 프랑스에서 스킵클랜드로 재배치하려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정들은 생산성, 임금, 그리고 유연성 수준에 관한 국제비교통계자료에 의해 지지된 것이다.
영국의 기계/인쇄/소매업	영국의 기계, 인쇄, 소매업부문의 (국내 및 다국적)기업들에 관한 5개년치 패널조사에 의하면 노동성과의 국제 "벤치마킹"은 기계업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인쇄업에서는 그리 흔치 않고 소매업에서는 드문 일이다.(「임금 및 노동시간: 국제적 차원의 중요성 탐구」, J Arrowsmith K Sisson, 미 칼간론주 IRRU, 워릭대학교(1999)). 기계업에서조차도 그런 벤치마킹은 국제적으로 통합된 생산체계를 지닌 다국적기업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세 분야중 가장 국제화된 기계업에서의 국제적인 임금 및 노동시간비교자료들은 임금조정에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영향을 지닌다. 총노동비용의 국제비교자료 활용은 임금 및 노동시간 교섭에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지닌다. 패널조사 필자들에 의하면 작업 및 고용관행에 관한 협상을 통해 확립된 고용인원 및 작업조직의 변화는 경영진이 총노동비용을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업체들의 총노동비용에 맞추려는 수단이 되고 있다.
폭스바겐	폭스바겐 브뤼셀 영업공장에서 있었던 최근 협상에서 경영진은 독일공장과 비교한 생산성, 임금비용, 노동시간조직에 관한 비교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이 기업의 브라질리사비공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부에서 있었던 노동시간단축 요구는 다른 유럽국가내 사회사들의 노동시간 비교를 근거로 하였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철강제조업체인 후고벤스(Hoogovens)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스페인의 폭스바겐(VW)과 시트(SEAT) 자회사에서의 노조 요구는 다른 유럽국가의 폭스바겐 사회사의 노동시간과 임금, 임직적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에 준거하여 제시된 것이었다.

다국적기업 경영진의 국제적 조정

다국적 기업들 내에서는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자들의 국제회의가 정례화되고 있다. 유럽 각지 사회사들의 인사 및 노사관계 관리지침을 정하고 정책사안들을 공유하는 것이 이런 회합의 중요기능이다. 그러나 이런 초국적 경영회합이 해당 다국적기업의 전국 혹은 지역별 단체교섭에서 경영진 입장을 조정하는데 활용되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다. 사업장별로 임금이 결정되는 곳에서는 협상과정의 국제 조정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영국 다국적기업의 3분의 2는 본부에서 국내 임금조정의 파라미터를 수립하는데, 그리고/혹은 해외 사회사에서 제시된 임금조정액을 승인(거부)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국경을 넘어선 관리」, P Marginson, P Armstrong, P Edwards J Purcell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6, No

3(1995)).

유럽종업원평의회와 노조의 협력

다국적기업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각국 노조들간의 접촉 연계 협조가 종업원평의회들을 통해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유럽종업원평의회는 다국적기업 노조들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조간 접촉 또한 다국적기업 안의 지역 혹은 전국 교섭을 지원하는 데서 정보교류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유럽종업원평의회들의 권한은 공식적으로는 정보청구와 협의에 한정되어 있으며, 극히 제한적으로만 교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설치근거가 된 협약들에 의하면 거의 반 수 가량의 종업원평의회들이 기업내의 전국 혹은 지역단위 협의나 교섭 사항에 속하는 사안들을 토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1/5가량의 협약은 임금과 수당이 종업원평의회 권한 밖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몇 안되지만 점점 많은 수의 종업원평의회가 전통적으로 단체교섭의 핵심사항은 아니었던 교육훈련, 평등권, 산업안전보건 등과 같은 사항들에 관해 기본협약 혹은 공동의 견서를 맺어 나가고 있다. 아코르(Accor), 다농(Danone), 이엔아이(ENI), 제네랄데조(Generale des Eaux), 네슬레(Nestle), 사라리(Sara

Lee)의 개인용품부문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이런 합의들은 때로 지역/전국 차원의 협상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유럽종업원평의회가 노조의 리더십 하에서 임금 이외의 노동조건들에 대한 교섭 안건과 요구를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노동조건,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관행들에 대하여 유럽 각국 종업원대표들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정보들은 기업내의 지역/전국 협상에 관련된 정보들을 의미하는데, 몇몇 사례를 보면 임금관련 정보까지도 교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단체교섭 안건들의 국제 조정을 향한 움직임은 노조와 노동자들의 희망사항으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벨기에에 기반을 둔 세네랄드방크(Generale de Banque)에서는 노조 대표들이 공동강령을 획정하려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정보/비교자료 교환을 위한 회합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진이 작업제도 변경과 노동조건 양보를 얻기 위해 국제 조정을 제안하는데 반해, 이에 맞서 대응해야 할 노조는 유럽종업원평의회와 입장을 조율하여 각 사업장들간의 경쟁을 축소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로 유럽의 제너럴모터스(GM)를 들 수 있다.

GM 독일 자회사인 오펔사에서 작업제도 변경에 관한 노사협회가 이루어지자, 벨기에와 영국의 GM 자회사 경영진도 협상에서 노동자들에게 유사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결국 노조와 종업원평의회 대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실제로 유럽자동차산업에서의 작업조직, 노동관행, 임금체계 등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유럽종업원평의회가 한 역할을 조사한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대표들은 유럽종업원평의회를 활용하여 해당 다국적기업의 내부 경쟁체제 내에서 특정한 국지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경영진은 전략적 경영과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자 논리에 따른 토론으로 종업원평의회를 유도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을 순탄하게 만들려고 한다(「유럽종업원평의회와 유럽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B Hancke, 미발간논문, Wissenschaftszentrum Berlin, 1999).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산업별교섭의 관성력이 사용자들의 교섭분권화 요구에 의해 위협받아온 독일 등 몇몇 나라 노조들은 유럽종업원평의회를 통해 단체교섭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확립된 산업부문별 교섭조정이 취약해 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시각

여기서는 유럽단일통화 창설을 포함하여 더욱 확대되고 있는 유럽통합이 각국

단체교섭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지 검토할 것이다. 우선 전국차원 노사중앙조직의 시각을 소개하고, 또 기계와 금융서비스부문의 노조와 사용자의 시각을 소개할 것이다.

각국 차원의 시각

사용자총연맹들 간에는 유럽통합의 진척이 단체교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각차가 크게 존재한다. 시각차의 한쪽 끝에는 벨기에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인금을 규율하는 중앙협약이나 사회협약이 인접국가들의 경제지표 변화를 준거로 하고 있는 벨기에나, 유럽평균을 준거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처럼 이미 유럽차원의 경제지표들을 준거로 삼고 있다. 스페인사용자총연맹도 전국협상에서 유럽 차원 경제지표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 시각차의 다른 끝에 있는 북유럽 4개국 사용자총연맹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전국/지역차원 단체교섭이 외부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 서로 다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총연맹들은 부문간/부분별/기업별 단체교섭이 유럽 차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쟁"에 대한 사용자의 전형적인 대응은 몇몇 사

용자총연맹들이 집중화된 현재의 교섭체계를 더욱 분권화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의 사용자단체들이 탈집중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앙협약에 간직된 임금정책의 유럽화 경향이 두드러진 벨기에조차 임금결정이 자체 경제발전 정도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총들 또한 자국 단체교섭체계가 유럽통합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인지, 아닐 지를 둘러싼 평가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노총은 유럽차원의 기준이 이미, 혹은 앞으로 전국차원의 부문간 교섭이나 산업부문별 혹은 기업별 교섭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 노총은 그런 유럽차원의 준거들이 가지게 될 잠재적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당장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그리스 등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단체교섭에 유럽차원의 준거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서로 다른 평가들로 인해 노총들이 단체교섭의 국제 조정 방식을 개발해 나가는 데서 강조하는 바도 각기 다르다. 단체교섭의 국제조정 필요성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

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나라의 노조가 노동조건, 노동기준, 노동시장규제 등에서의 경쟁을 피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는 임금인상 필요성이 강조되는 곳에서는 단체교섭의 국제조정이 임금정책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반대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단체교섭의 국제조정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몇몇 노총들은 각국별로 서로 다른 단체교섭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효과적인 단체교섭 조정방식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각 교섭 수준에서의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노총들은 다국적기업 차원의 교섭조정이 갖는 잠재적 이익을 강조하지만,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노총들은 부문별 조정을 강조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노총들은 부문간 조정을 중시하고 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경우 각 교섭 수준의 효과적인 조합(articulation)을 강조하고 있다. 교섭조정 발전에 덜 압박을 느끼는 북유럽 노총은 유럽차원의 산별교섭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의 산업간 연대를 유지하는 데 겪게 될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속산업에서의 전망

유럽금속노련(EMP)이 제안한 교섭조

정치침은 서유럽금속산업사용자조직(WEM)이 소집한 유럽각국 금속부문사용자단체들간의 토론을 야기하였다. 이 토론에서 나타난 대체적인 견해는 유럽금속노련이 전망하는 임금정책의 국제조정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각국의 교섭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일 것이며, 아직은 잠재적 효과를 평가하기에 이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단체교섭의 국제조정에 관해서 각국 금속부문 사용자단체들간에 분명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입장은 세 그룹으로 갈리고 있다.

1) 부문별 교섭기구가 없거나, 교섭 안전이 최저임금교섭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나라의 사용자단체들: 여기에는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이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유럽금속노련의 교섭조정 지침은 기업별교섭에서 널리 채택되어 활용될 수 있을 때에만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2) 부문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협회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형태의 단체교섭 국제조정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혹은 그것의 실현을 먼 장래의 일로 보고 있다. 4개의 노르딕국가들과 그리스 및 스페인이 여기에 속한다.

3) 부문별교섭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금속노련의 조정지침에 앞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용자단체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이 여

기에 속한다.

노조들 사이에서도 유럽금속노련의 조정지침이 갖는 의미 이해와 그 이행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어느 정도 앞에서 본 사용자단체의 입장차와 겹치는 경향이 있다. 차이는 특히 단체교섭 조정의 목적, 수단, 강제 등을 둘러싸고 확연해진다. 부문별/지역별 교섭구조를 기업별 교섭구조와 조화시키는 문제는 노조들에게도 주요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조의 입장 차이는 네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부문별 교섭기구가 없거나 부문별 교섭안전이 최저임금 같은 단일한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나라의 노조는 원칙적으로 유럽금속노련의 지침을 지지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그룹으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이 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유럽금속노련에 가맹한 2개 노조 중 한 노조가 조정지침의 일반 원칙에는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다른 노조는 지침의 지지여부에 대한 투표를 꺼리고 있다.

2) 몇몇 나라 노조들은 유럽금속노련 지침의 기본 착상에는 지지를 보내면서도 일반적인 교섭 목표와 그 집행에 관해서는 가맹조직들을 덜 구속하도록 보다 느슨하게 지침내용을 해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그룹에 속하는 노조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복구노조들로서 이들은 이미 복구 내에서 국가간 단체교섭 조정을 실행하고 있다.

3)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의 노조는 유럽금속노련 지침을 지지하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노르웨이금속노조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으며, 포르투갈금속노조는 유럽금속노련에 가맹하지 않았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 전망

국제사무금융노련유럽본부(EURO-FEET)는 1998년 3월 단체교섭 전략조정을 위해 가맹조직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한 바 있는데, 이 회의가 금융서비스분야 사용자단체들에게 강한 반항을 불러일으킨 것 같지는 않다. 1999년 6월에 이 조직이 채택한 후속활동계획의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대부분의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협회들은 은행업 분야의 사업체들이 각각별로 뚜렷한 특색을 지니고 있어 이 분야의 교섭이 가까운 장래에 국제적 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스웨덴의 사용자단체들은 유럽 각국의 사용자단체들간에 비공식적인 회합과 정보교환이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르딕 국가들의 사용자협회들 또한 교섭진행상황을 토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서로 만나고 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의 사용자단체들은 은행업

에서의 산업별 교섭을 폐기시켰다. 이런 곳에서는 EURO-FIET의 제안이 영향력을 갖는지 여부는 더욱 대규모화/국제화 되고 있는 은행의 기업별 교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금융노조들은 EURO-FIET 제안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의 이행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적다. 금속부문에서처럼 몇몇 금융노조들 또한 단체교섭의 국제 조정이 수행되는데 있어서 그에 관련된

특정한 수단과 목적을 둘러싸고 각국간에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의 노조들은 복구 금융노조들간에 오랫동안 정책 조정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틱연안국가들의 실질적인 교섭조정을 향하여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 산업별 노사합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 노조들은 유럽차원의 노조간 접촉 및 그에 따른 지역/전국/기업별 교섭에 관련된 정보교환에서 유럽종업원평의회(EWCS)이 갖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 ❖